



## 중국에서 벌어지는 북한판 여우사냥 작전

중국은 자국 영토 내에서는 전방위 디지털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해외에서는 반체제 인사를 잡아가는 ‘여우 사냥 작전’(猎狐专项行动, Operation Fox Hunt)을 벌이고 있다. 한국에서도 왕하이진(王海軍) 중국재한교민 협회총회 회장이 운영하는 ‘동방명주’라는 선상 중식당이 난통(南通)시 공안국이 운영 중인 ‘비밀 경찰서’로 지목되어 왕 회장이 탈세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sup>1)</sup> 하지만 그런 중국에게도 난제가 있다. 중국 땅에서 중국보다 더한 북한판 여우사냥 작전을 펼치며 납치, 살인을 서슴지 않는 북한 기관원들이다.

중국에서 활개 치는 북한 기관원들은 다른 나라로 망명하면 김정은의 권위나 북한의 평판을 떨어뜨릴 수 있는 기밀 정보를 가진 사람들을 주로 표적 삼는다. 여기에는 고위 관료, 경호부대원, 무기 전문가, 과학기술자, 해커, 외교관, 유학생, 해외 파견 노동자와 관리자 등 김정은 일가의 동선이나 사생활을 알거나 기밀 조직, 대북 제재 위반 사업에 관여한 대상이 포함된다.

또한 탈북을 돕거나 외부 정보, 종교를 북한으로 전달하는 한국인 등 외국인이나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인도 그들의 표적이 된다.

이번 이슈브리프는 북한이 중국에서 벌이는 초국가적 인권탄압(TNR)과 중국의 역할과 책임을 조명한다.<sup>2)</sup>

**1**  
당시 한국 형법 제98조의 간첩죄는 적용 대상을 ‘적국’을 위한 간첩행위로 제한했고, 판례상 ‘적국’은 북한에 한정됐다. 2026년 3월 12일 형법 개정으로 동년 9월 13일부터 외국을 위한 간첩행위도 처벌이 가능해졌다.

**2**  
초국가적 인권탄압(Transnational Repression)은 이슈브리프 제1호(2025.10)를 참조.

## 베이징의 北 블랙사이트: 주중 북한대사관 영사부 건물 지하의 비밀감옥

‘블랙사이트(black site)’는 적법 절차 없이 사람을 감금하는 비밀 구금시설을 일컫는다. 2021년 AP통신은 중국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 3층 빌라를 개조한 비밀 구금시설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sup>3)</sup> 2022년 스페인 소재 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중국 난통(南通)시, 원저우(温州)시, 칭텐(青田)현, 푸저우(福州)시 공안국이 운영하는 53개국 102개 ‘해외봉사소(海外服务站)’를 공개했다.<sup>4)</sup> 그 결과 여러 나라에서 중국 비밀경찰서가 조사받고 폐쇄되었다.

TJWG는 북한이 중국에서 운영해온 블랙사이트를 조사해왔다. 그중 베이징의 북한 대사관과 라오닝성 선양의 북한 총영사관을 주목했다. 복수의 진술인이 비밀 구금장소로 지목한 곳은 베이징 차오양구의 주중 북한 대사관(대사 리롱남) 영사부 건물 지하이다.

3

“Detainee says China has secret jail in Dubai, holds Uyghurs,” The Associated Press, August 17,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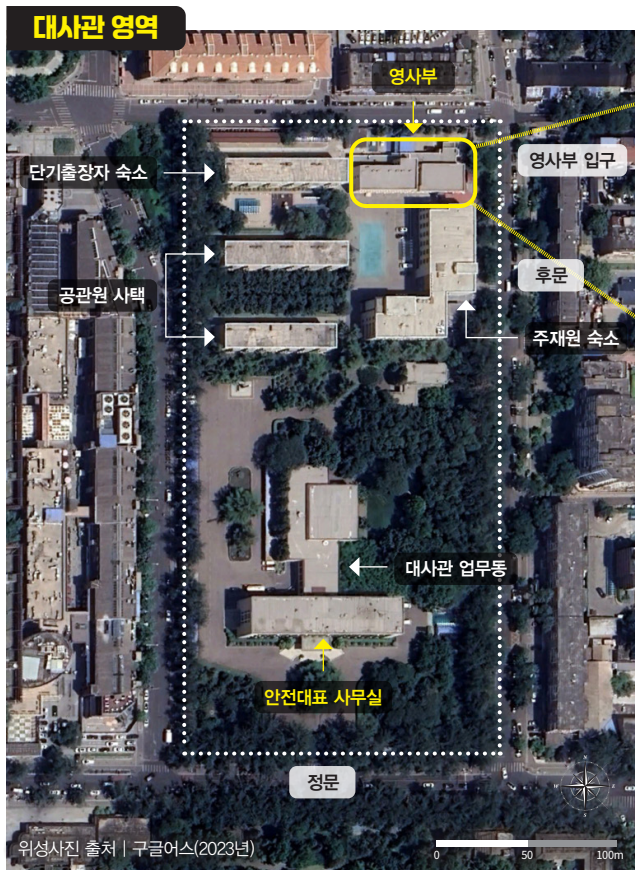
“베이징 대사관에 감옥이 있어요. 지하에. 되게 큰 감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가둬놓고 A를 반쯤 잡은 거 같아요. 정말 고통스럽게.” \_대북사업가

4

Safeguard Defenders, “110 Overseas - Chinese Transnational Policing Gone Wild,” September 12, 2022; “Patrol and Persuade,” December 4, 2022.

“(감옥시설은) 영사부 안에 있습니다. [베이징 대사관에] 들어가면 빌딩이 여러 개예요. 영사부 빌딩이라고 있는데, 그 지하가 감옥 역할을 하는 겁니다.” \_前 북한 외교관

주중북한대사관 내 각 건물의 주된 용도와 “지하 감옥”이 있는 것으로 지목된 곳은 다음과 같다.



지하 감옥을 언제 은밀하게 조성했는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지만, 의심스러운 시기에 대한 몇 가지 단서는 있다. 북한전문매체인 NK News는 2017년 북한이 대사관에 북한 주재원을 위한 숙소 건물을 짓고 있다고 보도했다.<sup>5)</sup> 이후 2024년 한국의 MBN은 익명의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송환할 외교관들을 구금하는 용도로 주중대사관에 '지하 감옥'을 지었다고 보도했다.<sup>6)</sup> 2025년 김정은의 방중을 앞두고는 대사관 외관 단장 작업이 언론의 관심을 끌었다.<sup>7)</sup>

중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 대부분의 여권은 중국 입국 즉시 회수되지만 파견 노동자 관리자, 외교관, 특수임무자 일부는 여권을 소지할 수 있다. 이들이 표적이 되어 잡혀가면 여권과 휴대전화기부터 압수된 뒤 감금된다. 베이징 대사관으로 압송되는 경우에는 영사부 건물 지하의 비밀감옥에 감금되어 반복되는 취조를 받는다.

“대사관에 1차 구류하고, 초보 수사를 적어도 일주일 많게는 한 달 진행한 후, 조국에 귀국한 다음 처벌합니다.” \_중국 내 북한 노동자 관리자

북한은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파견한 외교관, 유학생, 당 간부, 특수 파견자, 기관원이 망명 시도 조짐을 보이면 거짓 핑계로 베이징으로 유인한 후 도착하는 즉시 주중대사관에 감금한다.

5

Chad O'Carroll, "North Korean embassy in Beijing building 'hotel' for visiting citizens," *NK News*, July 11, 2017.

6

권용범, "[단독] '북, 중국 주재 대사관 지하 감옥 설치'... 탈북 사전 차단?", *MBN뉴스*, 2024년 7월 18일.

7

김철중, "김정은 방중 앞둔 北대사관, 전면에 금색 國章 새로 설치... 베이징역 경계도 대폭 강화", *동아일보*, 2025년 9월 1일.

8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22조 제1항 및 제41조 제1항 및 제3항,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38조(불법감금죄),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3조 및 제17조,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관리법」 제62조, 「중화인민공화국 외교특권과 면책 조례」 제25조 참조.

9

1984년 4월 17일 리비아 대사관에서 리비아 외교관이 반카다피 시위대를 총격해 현장에 있던 경찰관이 목숨을 잃는 등 다수 사상자가 발생하자 영국 정부는 리비아와 단교하고 리비아 외교관들을 추방했다. "1984: Libyan Embassy Siege Ends," *BBC News*, April 17, 19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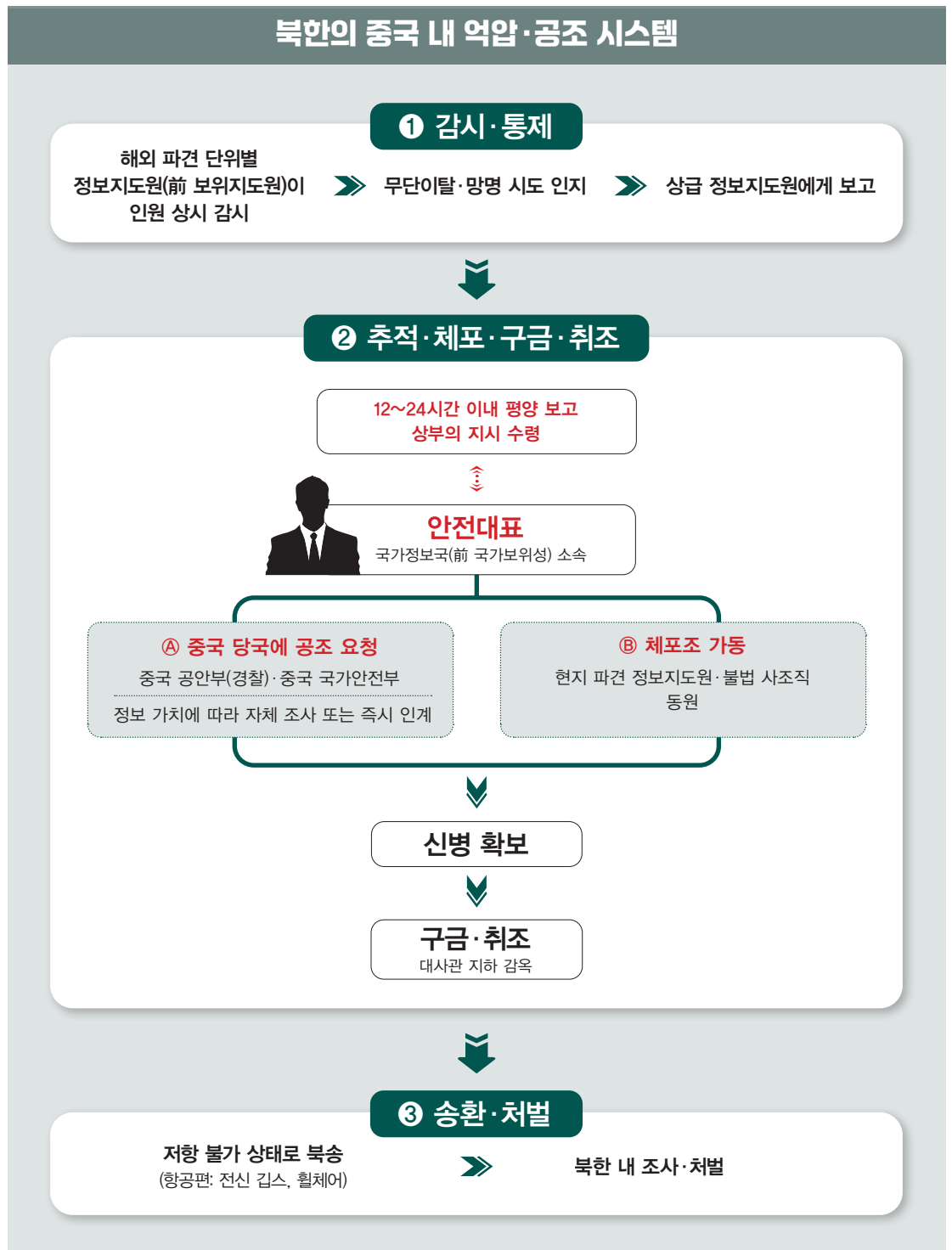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르면 중국 관헌은 북한 공관장의 동의 없이 공관을 출입하지 못하지만 북한 외교관은 중국의 법령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sup>8)</sup> 따라서 중국 정부는 베이징의 북한 대사관에서 벌어지는 중국법 위반행위에 대해 북한에 책임을 추궁할 수 있고, 필요하면 비밀감옥 운영에 연루된 북한 외교관을 기피인물(persona non grata)로 지정해 추방하거나 교역 제한, 북한 노동자 추방, 외교관계 단절 등의 수단으로 비밀감옥 폐쇄를 요구할 수 있다.<sup>9)</sup>

## “안전대표”: 중국 내 북한판 여우사냥 총책

북한의 외교공관은 자국민 보호보다 해외에서의 감시·통제에 방점을 둔다. 북한판 여우사냥의 총책은 외교공관에 파견된 '안전대표'이다. 안전대표는 공식적으로 영사 직함을 쓰지만 외무성 출신 직업 외교관이 아니라 국가정보국(前 국가보위성)에서 파견된 고위 간부이다. 특히 안전대표는 정해진 동선을 벗어나거나 연락이 끊긴 북한 사람을 잡아들이고 송환하는 불법 작전을 지휘한다.

파견 인원이 무단이탈하면 해외 파견 단위마다 배치된 정보지도원(前 보위지도원)이 이를 상급 감시자에게 보고하고, 안전대표는 이를 종합해 12~24시간 내에 평양으로 상황을 보고한다. 평양의 각 기관 본부들은 이러한 촘촘한 보고 체계로 해외 상황을 빠르게 파악한다.

안전대표는 표적 인물의 신원과 기밀 중요도 등을 종합 분석해 내린 평양으로부터의 지시에 따라 중국 내 각 조직에 배치된 정보지도원들을 납치조로 전환·지휘할 수 있다. 중국 현지 사조직을 동원하기도 한다. 북한 자체 정보망으로 도망자의 탈주로나 은신처를 파악하기 어려우면 마약이나 총기 소지 등의 거짓 범죄 혐의를 씌워 중국 경찰에 체포 공조를 요청한다.



표적 인물이 체포되면 북한 대사관 지하감옥에서 북한의 형사절차상 예심(豫審) 성격의 취조를 받는다.

“국경을 넘기 전 현지 대사관, 영사(부) 안에 파견된 간부가 비준하고 회의 이후 비밀공간에서 예비조사를 마쳐야 송환 후 처벌 수위를 명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_현 북한 사법당국자

안전대표는 취조한 결과를 평양으로 보고하고, 상부의 지시에 따라 강제 송환을 실행한다. 안전대표가 평양으로 보고한 내용은 복송된 사람은 물론 그 가족이나 가까운 인물에 대한 연좌 처벌도 좌우한다.

## 전신 갑스 상태로 휠체어에 태워져 고려항공편으로 송환된 북한 해커 배용주

체포된 표적 인물의 평양 이송은 용의주도하게 이뤄진다. 북한은 이송 경로를 단축하고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베이징발 평양행 직항편을 주로 이용한다. 이송 중 도주나 저항을 못하게 가혹한 방법을 쓰고 있다.

“비행기로 보냅니다. 못 움직이게 석고로. 이런 데(관절) 묶어가지고 석고로 아예 떠 가지고. 이런데 발 하고 해서. 소리도 못 지르게 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게 석고로 해서 갔더라구요.” \_대북사업가

중국은 항저우아시안게임 폐막 직후인 2023년 10월 9일 하룻밤 사이 탈북민 약 500명을 복송하여 국제적 공분을 샀다. 북한은 그에 앞선 8월 29일, 중국에 체류하던 유학생, 식당 종업원 등 약 80명을 우선 송환했다. 이 즈음 북한은 중국에서 암약하던 30대 초반 북한 해커 배용주를 강제 복송했다.

“[해커가] 한국으로 뛰다가 잡힌 거예요. (누가 잡았나요?) 중국 내몽골에서 국경을 넘어 몽골로 가려다가 중국 경찰에 잡혔죠. 6개월간 중국 측 취조를 받은 뒤 선양의 북한 총영사관이 넘겨받아 이틀 후 베이징 대사관으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_대북사업가

배용주의 여권은 그가 1988년 11월 11일 평양에서 태어났다고 기재하고 있다.

그는 복송 재일교포 가정에서 태어나 대남공작원을 양성하는 마동희군사대학(前 압록강대학)을 졸업했다.<sup>10)</sup> 다른 해커들처럼 배용주도 김일성종합대학 학생으로 위장해 평양과학기술대학(PUST)에서 영어를 익혔다고 한다. 이후 중국으로 파견되어 암호화폐를 탈취했고, 한국 정부기관과 중국 군사기관을 해킹했다. 하지만 한국으로 망명을 시도하다가 중국 당국에 체포됐다.

중국 국가안전부는 북한의 즉각적인 신병 인계 요구에도 불구하고 배용주를 6개월간 내몽골 후호허트(后霍赫特)에서 가혹하게 취조했다. 중국측 조사가 장기화되자 북한은 그를 넘겨달라고 더

강력히 요구했다. 중국은 북한 해커 조직을 파악한 후에야 선양의 북한 총영사관에 배용주를 넘겼다.

이틀 후 그는 베이징 북한 대사관으로 옮겨졌다. 배용주는 대사관 영사부 건물 지하감옥에 갇혀 중국 국가안전부에 무엇을 실토했는지 또다시 가혹하게 취조받았다. 복송되기까지 대사관 감금 기간은 약 1년에 달했다.



10

평양 사동구역에 있는 마동희군사대학은 북한 국방성 정찰정보총국(前 인민무력부 정찰총국) 소속 대남공작원 양성기관이다.

2023년 8월, 평양-베이징 항공 노선이 3년 7개월 만에 재개됐다.<sup>11)</sup> 배웅주는 전신 깎스 상태로 휠체어에 태워져 베이징발 평양행 항공편으로 이송됐다. 공항 관계자와 이용객의 주의를 끌지 않기 위해 환자로 위장한 것이었다.

TJWG는 복송된 배웅주가 탈북할 가능성이 남아 있는 한, 사건 공개를 보류했다. 하지만 제보자를 통해 3년이 지난 현재 그가 북한에서 사망한 것으로 파악되어 신원을 공개한다.

## 침식되는 중국의 사법주권

2004년 2월 북한 군관 출신인 한국 국적자 강건은 요덕수용소 영상을 입수해 공개했다. 그는 2005년 3월 중국 지린성 룡징시에서 북한 공작조에 납치되어 평양으로 이송됐고, 이후 생사와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2011년 8월에는 중국 요녕성 단둥시에서 대북 선교 활동을 하던 한국인 김창환(패트릭 김, 당시 46세) 목사가 북한 공작원이 사용하는 독극물인 ‘브롬화네오스티그민’으로 살해됐다. 그는 김정일 비판 문건을 북한으로 들여보낸 적이 있다. 김 목사가 살해되기 몇 달 전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우리 인민은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건드리는 자들에 대해서는 단호히 징벌할 것”이라고 예고했다.<sup>12)</sup>

2016년 4월에는 중국 지린성 창바이조선족자치현 장백교회의 한총련 담임목사가 북한 요원들에 의해 살해된 채 야산에서 발견됐다. 중국 국적인 조선족 목회자가 살해되자 중국 당국은 수사에 나섰지만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sup>13)</sup> 이후 대북 선교 활동이 크게 위축됐다.

2017년 5월 29일, 북한전문매체 DailyNK의 탈북민 출신 함진우 기자는 북중 국경 일대에서 신원미상의 두 남성에게 의해 북한으로 납치됐다. 북한 당국은 ‘최송민’이라는 필명을 사용하던 그를 제거할 기회를 노렸던 것으로 보인다. 함 기자는 10년째 강제실종 상태이다.

북한은 표적한 인물의 위치를 파악하고 은밀히 접근하기 위해 중국 공민을 공작에 활용하거나 북한 요원을 밀수입자·학생 등으로 위장 침투시켜왔다. 북한 공작원들은 중국어와 지리를 익히고 지역 인맥을 구축해 지시가 있을 때마다 정보 수집·감시·유인·납치에 투입된다.

북한 공작원들의 범죄 활동은 1998년 수정·강화된 중국과 북한 간 합의서와 정면 배치된다.<sup>14)</sup> 합의서 제5조 1항은 일방이 상대국 영토에서 직접 수사나 체포 활동을 할 수 없고, 필요한 경우 상대국에 수사·체포를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타국의 영토 내에서 허락 없이 수사, 체포, 구금을 할 수 없는 것은 사법주권의 원칙이자 외교관계의 기본이다.

2014년 2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DPRK)는 중국이 자국 영토에서 북한 요원들의 납치 행위를 방지하고, 붙잡힌 가해자를 기소하고 적절히 처벌하며, 납치 지시를 내린 책임자의 범죄인 인도를 요구할 것을 권고했다.<sup>15)</sup> 중국 당국은 북한 공작원의 활동을 인지하면서도, 사건이 공론화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sup>11</sup> 북한은 코로나19 팬데믹에 즈음하여 2020년 1월 중국은 물론 해외와의 모든 육·해·공 통로를 봉쇄했다. 이후 2023년 8월 22일 북한 고려항공 JS151편이 평양순안 국제공항을 이륙해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에 착륙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sup>12</sup> 조선중앙통신, “北조평통, 南인권거론에 ‘징벌할 것’”, 2011년 5월 5일.

<sup>13</sup> 문성휘, “한총련 목사 살해사건을 둘러싼 의혹들”, 자유아시아방송, 2016년 6월 27일.

<sup>14</sup>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안전보위부·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 “국경지역에서 국가의 안전과 사회질서 유지사업에서 호상 협조할데 대한 합의서” (1998년 7월 8일 체결).

<sup>15</sup> “Report of the detailed findings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PRK,” A/HRC/25/CRP.1, para. 1221(f).

북한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왔다. 중국 법원은 1995년 7월 한국인 안승운 목사 납치범 4명 중 주범인 북한 요원 이경춘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하는 데에 그쳤다. 중국은 안 목사의 송환 요구 없이 만기 출소한 이경춘을 북한으로 추방했다. 반면, 북한은 안승운 목사를 돌려보내지 않았다. 2014년 북한 감옥에 수감됐던 조선족 장문석 집사의 경우, 만 11년이 지난 2025년 11월에서야 중국으로 귀환할 수 있었다.

TJWG는 북한이 중국에서 벌이는 TNR 공작을 중국 당국의 관여 정도에 따라 세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① 북한 기관원이 중국에 통보 없이 독자적으로 실행하는 경우, ② 중국이 북한 체포조의 활동을 알고도 묵인하는 경우, ③ 중국 당국이 추적, 체포, 조사, 신병 인계까지 적극 협력하는 경우이다. 북한의 TNR은 심각한 국제 범죄이자 인권침해일 뿐만 아니라 중국의 사법주권과 적법 절차도 훼손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중국이 북한의 TNR을 계속 묵인하고 방치하는지 예의주시하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다.

---

### 이슈브리프 다음 호와 2027년 종합보고서는

이슈브리프 다음 호는 북한이 러시아에서 벌이는 TNR을 조명한다. 2027년 발간할 종합보고서에는 북한이 저지르는 TNR 행위들과 다양한 수법, 가해 조직과 인물 정보를 공개하고, 북한의 TNR을 끝내기 위해 국제사회와 관련국 정부가 취해야 할 구체적 조치를 권고할 것이다.

이 이슈브리프는 GRC의 의견을 반영하여 TJWG가 작성했으며, 최종 내용 편집 책임은 TJWG에 있습니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 2014년 서울에 설립된 인권조사기록 및 애드보커시 NGO입니다.

무력분쟁이나 독재 체제로부터 전환 중이거나 아직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회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권침해를 다루는 모범사례를 개발하고, 피해자 중심 접근법으로 배상을 실현하며 가해자 책임을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대규모 잔학행위에 대한 인권 조사기록과 책임규명을 선도하는 기관 및 개인과 협력하고 경험을 공유합니다.



**글로벌라이츠컴플라이언스(GRC)** | 2013년 설립된 국제법 재단으로, 국제법의 적용을 통해

책임성을 증진하고, 사법 제도를 강화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GRC는 시리아, 이라크,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수단, 예멘, 아프가니스탄, 우크라이나,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등 전 세계, 특히 분쟁 영향 지역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해 왔습니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 (TJWG)

대한민국 서울

웹사이트 [www.tjwg.org](http://www.tjwg.org) (한국어) / [en.tjwg.org](http://en.tjwg.org) (영어)

이메일 [info@tjwg.org](mailto:info@tjwg.org)

전화 02-722-1162

팩스 02-722-1163